



한국시설안전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044('18.12.27.)호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18.12.27.)을 받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된 세부지침 및 매뉴얼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에서 *열람이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침: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관련법령, 매뉴얼: 홈페이지 → 소식/참여 → 자주하는 질문

붙임: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044(2018.12.27.)호, 1부. 끝.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수신자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울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직 원 전종원 부장 박재영 시설안전유지관리지원센터장 오영석
전결 01/07

협조자

시행 국가시설관리본부-555 (2019.01.07.) 접수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 131 인재교육관 4층 유지관리지원센터 / <http://www.kistec.or.kr/>
전화 055-771-1922 / 전송 055-771-1950 / dullpia@kistec.or.kr / 대국민 공개